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25.(화) 09:00 < 10.25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	책임자	과 장 안성호 (044-203-40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주형 (044-203-4069)

공장 신·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한다

-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10.25(화) 국무회의 통과 -

□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해외진출기업복귀법')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('22.11.1. 시행)이 10.25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* 개정 조문 :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라목을 신설

> 라.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(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)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
> (부칙 : 개정령안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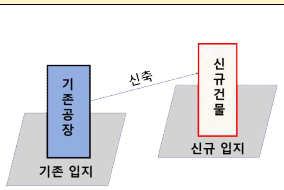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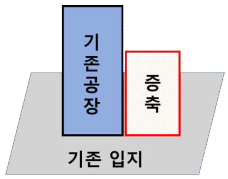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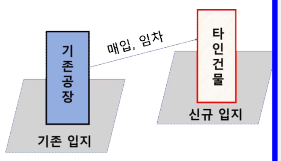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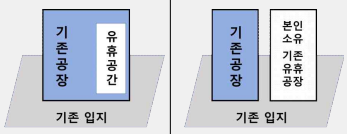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**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·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·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**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은 **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'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'**을 규정하고 있다.

○ 현행 시행령은 **'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'을 ①공장의 신설, ②공장의 증설,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·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**로 제한한다.

○ **이번 개정령안**을 통해 **'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'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**된다.

<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>

구분	가. 공장신설	나. 공장증설	다. 매입·임차	(新) 라. 기존공장 내 시설도입
개념정의				
지원항목	입지 O 설비(건축) O 설비(기계) O	입지 X 설비(건축) O 설비(기계) O	입지 △ (매입O, 임차X) 설비(건축) X 설비(기계) O	입지 X 설비(건축) X 설비(기계) O
비고	물리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, 증축 또는 매입·임차			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

○ **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**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, 기존과 유사하게 **투자보조금,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**을 받을 수 있다.

□ **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**한 것인 바, **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·고용 창출,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**

○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,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('22.6.15), 새정부 경제정책방향(6.16)에 포함된 **국내복귀(유턴)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**이다.

○ 또한, 기업 **면담,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**한 것으로서, **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.**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